

[변경 대비표]

■ 변경 집합투자기구 및 변경 서류

편 드 명	BNK K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변 경 서 류	집합투자계약
변 경 사 유	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- 직판클래스 삭제
효 력 발 생 일	2025년 04월 17일

■ 변경대비표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항 반영, 직판클래스 삭제	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~13. (생략)</p> <p>14. Class S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</u></p> <p>15. Class S-P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 <p>16. Class J-e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</u></p>	<p>①~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~13. (현행과 동일)</p> <p>14. Class S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</u></p> <p>15. Class S-P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다른 종류 수익증권 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익증권</u></p> <p>16. <삭제></p>

		<p><u>가입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</u></p> <p>17. <u>Class J-Pe 수익증권 :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</u></p> <p>18. <u>Class J-P2e 수익증권 :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</u></p>	<p>17. <삭제></p> <p>18. <삭제></p>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직판클래스 삭제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15. (생략)</p> <p>16. <u>Class J-e 수익증권</u></p> <p>17. <u>Class J-Pe 수익증권</u></p> <p>18. <u>Class J-P2e 수익증권</u></p> <p>②~⑤ (생략)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15. (현행과 동일)</p> <p>16. <삭제></p> <p>17. <삭제></p> <p>18. <삭제></p> <p>②~⑤ (현행과 동일)</p>
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오기정정	<p>① 다음 --(생략)--한다.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</p> <p>4.~5. (생략)</p> <p>②~④ (생략)</p>	<p>① 다음 --(현행과 동일)-- 한다.</p> <p>1.~2. (현행과 동일)</p> <p>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</p> <p>4.~5.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~④ (현행과 동일)</p>
제39조 (보수)	직판클래스 삭제	<p>①~③(생략)</p> <p>1.~15. (생략)</p> <p>16. <u>Class J-e 수익증권</u></p> <p>가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1.23</u></p>	<p>①~③(현행과 동일)</p> <p>1.~15. (현행과 동일)</p> <p>16. <삭제></p>

		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10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15</u>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12</u> 17. <u>Class J-Pe 수익증권</u>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1.23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10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15</u>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12</u> 18. <u>Class J-P2e 수익증권</u>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1.23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10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15</u>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12</u>	17. <삭제> 18. <삭제>
제52조(수익증권의 통장 거래)	직판클래스 삭제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저축약관"(Class C-P, C-Pe, S-P 및 J-Pe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"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")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저축약관"(Class C-P, C-Pe, S-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"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")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
<부칙>		<신설>	<u>< 부 칙 7 ></u> (시행일) 이 투자신탁은 2025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<끝>